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30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남양주왕숙 A-14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550호(2022.1.6.)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왕숙 A-1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남양주왕숙 A-14BL 공공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남양주왕숙 공공택지 지구 내 A-14BL

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·내곡리·내각리 일원, 진접읍 신월리·진관리·

사능리·용정리·송능리·배양리,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)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)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